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3월 2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2일

3. 제안 이유

- 농업인회관의 설치에 따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 골자

-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회관은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함 (안 제3조)
- 회관의 용도는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 농업인단

체사무실, 농업인단체사업지원,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 (안 제4조)

- 필요시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0이상으로 함 (안 제6조)

- 회관 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회관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의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함 (안 제8조)

-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사업 위탁시 지도감독 및 수탁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함 (안 제10조)

5. 검토 의견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을 설치 운영한다 함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형태이며,

제3조(운영관리) 회관의 운영관리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제3항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 재산관리관으로 관직 지정되어 있으며

제4조(용도)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조례로 용도를 규정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사업의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제6조(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88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4호(청사의 구내재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중 일

시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근거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즉 행정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정하였으므로 동조례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